

의안 검토 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 8.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안건요지 : 따 로 불 임
4. 검토의견 : 따 로 불 임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9년 7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정 수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09년 6월 8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및 제4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도로법」이 지난 2008. 3. 21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관련 조문을 개정된 조항으로 변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